

의안번호	제 291 호
승 인 년 월 일	1994. 8. 29. (제34회 제1차 본회의)

의결내용
원안가결

議案 :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자	보은군수 (재무과)
제안년월일	1994. 8. 23

## 의 결 내 용

### 1. 안건명 : 보은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안)

### 2. 제안 이유

UR농어촌지원대책으로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가능 사항을 추가 규정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등 공유지 대부 사용자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 3. 주요 골자

-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 분납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규정함(조례 제22조)
  - 천재·지변등 매수인에게 귀책사유 없는 사고발생 경우
  - 주택개량재개발시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된 기준에 해당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농경지 대부료를 현행보다 1 / 3 수준으로 인하함.(조례 제23조 제2항)
  - 농지소득금액의 5 % 또는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
-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연 19%에서 연 15 %로 인하고 변상금의 납부지연에 대한 연 15%연체요율을 규정함.(조례 제28조)

### 4. 개정조례(안)

"별첨"(안)과 같음

### 5. 입법예고결과

- 예고기간 : 1994. 6. 20 - 1994. 7. 11
- 예고방법 : 군보, 군 및 각읍,면 게시판 공고
- 의견제출 : 없음.

#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중 "매각"을 "사용허가"로 하고 제11조 제3항 제1호중 "직할시이상지역"을 "특별시·직할시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중 "3백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13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2조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 다음에 제4호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9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천재·지변·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6.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23조 제1항 단서중 "새마을사업에"를 "취락개선사업에"로 하고 제2항중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를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금)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제39조중 "영 제95조 제2항 제24호"를 "영 제95조 제2항 제25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안)
<p>제7조(시.군공유재산심의회)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p> <p>2. 중요재산의 <u>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u> 사항</p>	<p>제7조(시.군공유재산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1. -----</p> <p>2. -----<u>사용허가</u>-----</p> <p>-----</p>
<p>제11조 (관리 및 처분) ①, ② (생략)</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 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u>직할시 이상지역</u> : 3백제곱미터 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p> <p>2, 3 ( 생 략 )</p> <p>4. 시가 <u>3백만원</u> 이하의 기타재산</p> <p>④ ( 생 략 )</p>	<p>제11조 (관리 및 처분) ①, 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p> <p>-----</p> <p>-----</p> <p>1. <u>특별시.직할시 지역</u> : -----</p> <p>----- ( ----- )</p> <p>----- )</p> <p>2,3. ( 현행과 같음 )</p> <p>4. -- <u>1천만원</u> -----</p> <p>④ ( 현행과 같음 )</p>
<p>제13조(사용허가기간) ①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 만료 1월전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 허가 하여야 한다.</p> <p>② <u>기부채납재산에</u> 대하여는 기부재산의</p>	<p>제13조(사용허가기간) -----</p> <p>-----</p> <p>-----</p> <p>-----</p> <p>-----</p> <p>-----</p> <p>-----</p> <p>-----</p> <p>② ( <u>삭 제</u> )</p>

현행	개정 (안)
<p>사용허가기간까지 사용허가할 수 있다.</p> <p>제 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영 제 100조 제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가 곤란하여 분할납부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400평방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p> <p>2, 3. ( 생략 )</p> <p>( 신설 )</p> <p>( 신설 )</p> <p>( 신설 )</p>	<p>제 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p> <p>-----</p> <p>-----</p> <p>-----</p> <p>-----</p> <p>1. 제 39조 제 1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2, 3. ( 현행과 같음 )</p> <p>4. 천재·지변·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p> <p>5. 시·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도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p> <p>6. 도시재개발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p>

